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4. 3. 22.

제안자 : 우법성위원외 3인

## 1. 수정이유

행정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수입기관인 시·군 지방자치단체에서, 수입 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권한만을 위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 행정추진에 곤란성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불부합한 위임인바 수입능력이 갖추어 질 때 까지 위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

## 2. 수정 주요 골자

“동물약사감시” → 삭제 (안(별표1)의 위임사무 중 축산과 소관 위임 사무명)

#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(별표1)의 위임 사무 중 축산과 소관 위임 사무명인 “동물약사감시”를 삭제한다.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1) 중 보건과 소관 제61호 다음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보건과	62	의료보수 인가	의료법 제37조

(별표1) 중 축산과 소관 제39 내지 제54호를 제40호 내지 제55호로 하고 제39호 및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축산과	39	동물약사 감시	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9조제2항
	56	내수면어업면허	내수면개발촉진법 제7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